

2023 경기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센터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운영비-일반수용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 꿈지 제외) ○ 사업 총괄 기획자와 단순사무행정보조 인력은 구분하여 인건비 편성할 수 있으며 기획비를 최대15%까지 책정 가능함 ○ 기획자, 주,보조강사와 병행가능 ○ 기획자, 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 혹은 그 가족(직계비존속)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지원비 집행 불가 - 예시) 주강사 김OO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교육자료 구입 ⇒ 불가 ○ 초빙(특강)강사 편성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 예시) 1등급 특강강사 3시간 출강 시 (250,000x2시간)+(250,000*50%x1시간)=625,000원 ※ 단, 기타소득 8.8% (55,000원) 공제 후 실지금액은 570,000원 ○ 업무추진비(강사 회의식비, 참여자 다과비)의 합은 총 예산의 10% 이하 편성 가능하며 1인당 20,000원 내외 책정 가능 ○ 교통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계된 출장에 한하여 증빙서류(영수증, 출장보고서)로 지출 가능
집행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비 책정 - 참여자 대상으로 소정의 참가 보증금 및 재료비 책정 가능(금액 및 진행사항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되, 관련책임은 단체에게 있음) -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에 금액 활용계획 및 사용내역서 증빙 필요 ○ 회의식비 편성 - 회의 운영비는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 가능하되, 회의록 제출(일시, 장소, 내용, 참여자) ○ 원천징수 관련 - 수업준비비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는 원천세를 제하고 지급한 뒤, 원천세 신고해야 함 - 대표자 자신에 대한 인건비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총금액 지급후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임의단체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의 대표는 똑같이 원천세 신고해야 함)
정산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 절차 전산화 - 종이영수증X, 모든 지출서류는 스캔또는 사진촬영후 각 사업메일로 제출 <p style="color: red; font-size: small; margin-top: 5px;"> ※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단체)에 있음 ※ 사업신청단계에서는 총 지원금액과 간략 예산 내역을 공모신청서 내에 작성하여 제출 --> 선정 후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 예산산출계획을 작성하여 NCAS를 통해 교부신청, 센터 협의 없이 자비로 프로그램 운영 후 지원비로 보전할 수 없음 </p>

- 1 -

2023 경기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편성불가 항목

※ 해당 편성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단체 및 개인)에 있음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자산취득성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책상, 의자 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PC, 프린터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상설운영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프로그램 교육공간이 아닌 운영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관련 상품권, 상금, 사례금 지급 금지 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회 식사비, 매회 회의비, 단순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며, 회의비의 경우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만 편성하고,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함
주류 및 유흥성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구입 불가하고 유흥성 업소에 집행 불가함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 지출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경기센터와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내에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자 인건비 등) 지급 불가 ○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교차 지급 불가 (단, 기획자와 주,보조강사 중복 가능) 예)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 (주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입차 시 사전에 센터와 협의 필수

- 2 -

2023 경기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예산 편성가능 여부

목	세	세세목	산 출 기 초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업참여인력 인건비	<p>기획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총괄기획비 총 예산의 최대 15%까지 책정가능 (단, 사업교부정산 등 행정업무 포함) 													
			<p>수업 준비, 개발비 (역량강화 학습모임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참여인력 비용 ○ 기획자 · 주강사 · 보조강사 : 회당 70,000원 - 전체 교육회차의 총 30% 이내에서 책정 가능 ※ 교육 프로그램 준비 :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획 회의, 교보재 제작 등 ※ 수업준비비는 인건비항목으로 똑같이 원천세 공제 후 지급 													
			<p>강사/ 초빙강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9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사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강사 : 시간당 50,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30,000원 - 교육회차, 교육시간은 자유롭게 편성가능하나, 회차당 4시간 이상 편성시 구체적인 수업계획 작성 가능하여야 함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초빙 강사로 (연수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0%;">등 급</th> <th style="width: 65%;">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강사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1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0/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0/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시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 대학총 · 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강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강사 : 시간당 50,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30,000원 - 교육회차, 교육시간은 자유롭게 편성가능하나, 회차당 4시간 이상 편성시 구체적인 수업계획 작성 가능하여야 함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초빙 강사로 (연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0%;">등 급</th> <th style="width: 65%;">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강사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1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0/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0/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시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 대학총 · 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구 분	등 급	지급금액	강사로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구분	내 용															
강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강사 : 시간당 50,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30,000원 - 교육회차, 교육시간은 자유롭게 편성가능하나, 회차당 4시간 이상 편성시 구체적인 수업계획 작성 가능하여야 함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초빙 강사로 (연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0%;">등 급</th> <th style="width: 65%;">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강사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1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0/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0/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시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 대학총 · 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구 분	등 급	지급금액	강사로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구 분	등 급	지급금액														
강사로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목	세	세세목	산 출 기 초																																
			<p>○ 각종행사 진행 사례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지급기준</th> <th style="width: 40%;">단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주제발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A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C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0원</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사회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A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C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원</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지정토론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A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C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원</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5px;">※ 등급 적용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15%;">등급</th> <th style="width: 85%;">해당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A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의 종건 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C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급',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기준	단가	주제발표자	A급	500,000원	B급	400,000원	C급	300,000원	사회자	A급	300,000원	B급	200,000원	C급	100,000원	지정토론자	A급	300,000원	B급	200,000원	C급	100,000원	등급	해당자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의 종건 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C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급',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구분	지급기준	단가																																	
주제발표자	A급	500,000원																																	
	B급	400,000원																																	
	C급	300,000원																																	
사회자	A급	300,000원																																	
	B급	200,000원																																	
	C급	100,000원																																	
지정토론자	A급	300,000원																																	
	B급	200,000원																																	
	C급	100,000원																																	
등급	해당자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의 종건 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C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급',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목	세	세세목	산출기초												
		기타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례비 - 사진, 영상, 홍보물 디자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과업별 일시적 인건비성 경비 - 시중 단가를 반영한 적정금액으로 책정 (디자인 작업 같은 경우 *디자인대가기준종합정보시스템 노임단가 기준 참고하여 책정 가능) - 계약서(표준계약서) 작성 필수 - 내부인력 책정 가능하나 수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센터와 협의 후 편성 가능 												
		회의수당 및 자문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등급</th> <th>지급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자문회의의 참석수당</td> <td>심층</td> <td>200,000원</td> <td rowspan="3">· 회당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50% 적용 증액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가능</td> </tr> <tr> <td>일반</td> <td>100,000원</td> </tr> <tr> <td>좌담회</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수당 및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지급 가능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고	자문회의의 참석수당	심층	200,000원	· 회당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50% 적용 증액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가능	일반	100,000원	좌담회	100,000원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고												
자문회의의 참석수당	심층	200,000원	· 회당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50% 적용 증액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가능												
	일반	100,000원													
	좌담회	100,000원													
		교육재료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												
		홍보비/인쇄비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 : 온라인 홍보 플랫폼에 게재하는 광고비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는 정식 광고에 한하여 집행 가능												
		기타운영비	로그인 운영 및 학습모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안전물품, 학습모임 교보재, 용달 등)												
		회계검사수수료	(필수) 회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우편료, 택배발송료, 킷서비스 이용료, 이체수수료 등													
임차료	대관/임차	교육 공간 대관 / 장비, 소품 임차 등													
일반 용역료	용역료	외부 업체 용역료													

- 5 -

목	세	세세목	산출기초																																																																																																																
여비	국내 여비	여비 및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력 여비 및 교통비 지급 여부는 선택사항, 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름 ○ 출장경비 지급 기준(수업제외) - 4시간 이하 출장 : 1만원 정액 지급 - 4시간 이상 출장 : 2만원 정액 지급 ○ 교통비 - 대중교통 및 개인차량 이용시 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서울-제주 등 철도, 항공비 등 실비 지급은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지급가능 (단, 교통비 산출기준으로 계산된 교통비와 중복하여 지급불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30-100km</th> <th colspan="2">101-200km</th> <th colspan="2">201-300km</th> <th colspan="2">301-400km</th> </tr> <tr>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30-40</td> <td>7,000</td> <td>101-120</td> <td>12,000</td> <td>201-220</td> <td>24,000</td> <td>301-320</td> <td>44,000</td> </tr> <tr> <td>41-60</td> <td>8,000</td> <td>121-140</td> <td>14,000</td> <td>221-240</td> <td>28,000</td> <td>321-340</td> <td>48,000</td> </tr> <tr> <td>61-80</td> <td>9,000</td> <td>141-160</td> <td>16,000</td> <td>241-260</td> <td>32,000</td> <td>341-360</td> <td>52,000</td> </tr> <tr> <td>81-100</td> <td>10,000</td> <td>161-180</td> <td>18,000</td> <td>261-280</td> <td>36,000</td> <td>361-380</td> <td>56,000</td> </tr> <tr> <td>-</td> <td>-</td> <td>181-200</td> <td>20,000</td> <td>281-300</td> <td>40,000</td> <td>381-400</td> <td>60,000</td> </tr> <tr> <th colspan="2">401-500km</th> <th colspan="2">501-600km</th> <th colspan="2">601-700km</th> <th colspan="2">701km 이상</th> </tr> <tr>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r> <tr> <td>401-420</td> <td>64,000</td> <td>501-520</td> <td>84,000</td> <td>601-620</td> <td>104,000</td> <td>701~</td> <td>124,000</td> </tr> <tr> <td>421-440</td> <td>68,000</td> <td>521-540</td> <td>88,000</td> <td>621-640</td> <td>108,000</td> <td></td> <td></td> </tr> <tr> <td>441-460</td> <td>72,000</td> <td>541-560</td> <td>92,000</td> <td>641-660</td> <td>112,000</td> <td></td> <td></td> </tr> <tr> <td>461-480</td> <td>76,000</td> <td>561-580</td> <td>96,000</td> <td>661-680</td> <td>116,000</td> <td></td> <td></td> </tr> <tr> <td>481-500</td> <td>80,000</td> <td>581-600</td> <td>100,000</td> <td>681-700</td> <td>120,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교통비 산출기준</p> <p>※ 단,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가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하며, 30km 이상이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할 수 없음</p> <p>☞ 기밀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p>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강사 회의식비	강사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비, 식대 등																																																																																																																
		프로그램 다과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																																																																																																																
인건비	일용임금	보조 인력	일용직(아르바이트) - 1일 행사 보조, 정산 보조 등 ☞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적용																																																																																																																

- 6 -